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8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 강득구·오영환·윤재갑

양정숙・박성준・윤미향

문정복 • 주철현 • 김민석

송영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의 격차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지방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과 평가
 - 나.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관리
 - 다. 평생교육 운영 및 주민 참여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 지방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u>사무</u>
	가.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u>과 평가</u>
	나.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u>관리</u>
	다. 평생교육 운영 및 주민
	참여 지원